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 발전하는 희망기업”

서울에너지공사

받는곳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제정 보고

1. 관련근거

가. 정관 제10조(임원) 제5항

나. 사규관리규정 제4조(입안)

2. 위와 관련, 사규심의위원회의 원안의결 받은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전문	1부.
	2.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규정 비교검토표	1부.
	3. 제11회 사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사원

허수진

김사흠

정록성

김용남

박진성